

의안번호	2207935
의 퇴 인	김선민의원
회 답 일	2025.04.10.
추 계 번호	25C0652
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현장지원을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5,900만원, 2030년 13억 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0억 6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	759	869	995	1,140	1,305	5,069	1,014

주: 음영은 실적치, 그 외는 전망값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2 (중앙환자안전센터)	-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(제2항) 5. 환자안전사고의 접수·검증·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지원(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14조 (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사한 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인 분석, 사후 개선활동 지원 및 개선결과 확인 등의 현장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 - 현장지원 대상 보건의료기관의 선정, 지원 절차·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5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2 (중앙환자안전센터)	○	○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2	안 제14조 (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)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유사사례를 준용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안 제14조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현장지원을 안 제8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그 비용을 100%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현장지원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¹⁾
 - 개정안에 따른 현장지원 단가는 보건복지부 유사사례인 “의료기관 컨설팅 서비

1) 현행법 제14조(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)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

스 사업”을 준용하며, 추가재정소요는 현장지원 기관 수와 단가의 곱으로 추계
 - 의료기관 컨설팅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인증 준비, 모의조사 등 의료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, 2024년 기준 47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운영하였으며, 1개소당 컨설팅 비용은 1,230만원임(총 5억 7,800만원 배정)

- (현장지원 기관 수) 본 추계에서 준용하는 의료기관 컨설팅 서비스 참여기관의 2024년 47개소를 기준으로 매년 12.3%씩 증가 가정
 - 현장지원 기관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.3% 증가함²⁾

- (현장지원 단가) 보건복지부의 “의료기관 컨설팅 서비스”의 개소당 컨설팅 비용 1,230만원을 준용하며,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

□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현장지원을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5,900만원, 2030년 13억 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0억 6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건,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현장지원 기관 수(A)	47	53	59	67	75	84	94	-	-
현장지원 단가(B)	12.30	12.56	12.81	13.07	13.33	13.59	13.87	-	-
추가재정소요(A×B)	578	663	759	869	995	1,140	1,305	5,069	1,014

주: 음영은 실적치, 그 외는 전망치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2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2020년 13,919건에서 2022년 22,118건으로 연평균 12.3% 증가하였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